(韓国語)

고용보험의 신제도가 스타트!

경제사회의 변화와 노동방식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재취직 지원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다해 갈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가 바뀝니다.

개정의 요점

◎ 조기 재취직의 촉진, 다양한 노동방식에의 대응, 재취직이 곤란한 상황에 대응한 급부의 중점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확보의 관점에서 이하의 개정이 행해집니다.

[주요 변경점]

① 기본수당의 급부율, 상한・하한액의 개정
② 기본수당의 소정 급부일수의 개정
③ 60세 도달시 임금일액(日額) 산정의 특례폐지
④ 육아, 양호간병에 의한 휴업, 근무시간 단축조치에 대한 기본수당 일액(日額)산정의 특례 창설
⑤ 공공직업 훈련의 복수회_수강 등 특례조치의 확충
⑥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 액수의 개정
⑦ 취업수당의 창설
⑧ 교육훈련 급부액 등의 개정
⑨ 고연령 고용계속 급부의 지원요건, 급부율의 개정
⑩ 부정수급의 경우 납부명령액 등의 개정
⑪ 고용보험료율의 개정

후 생 노 동 성
도도부현(都道府懸)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그의 1 기본수당의 급부율, 상한 · 하한액이 바뀝니다.

● 기본수당의 급부율, 상한 · 하한액이 바뀝니다. 이것은 개정고용보험법의 시행일 이후에 이직하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 기본수당 일액(日額)은 다음 표의 임금일액(日額)×급부율의 액수가 됩니다.

연 령	임 금 일 액	급 부 율
60세 미만	~~2,140~~ 2,120 엔 이상 ~~4,210~~ 4,180 엔 미만	80%
	~~4,210~~ 4,180 엔 이상 ~~12,220~~ 12,130 엔 이하	80%~50%
	~~12,220~~ 12,130 엔 초과	50%
60세 이상 65세 미만	~~2,140~~ 2,120 엔 이상 ~~4,210~~ 4,180 엔 미만	80%
	~~4,210~~ 4,180 엔 이상 ~~10,950~~ 10,870 엔 이하	80%~45%
	~~10,950~~ 10,870 엔 초과	45%

● 임금일액(日額), 기본수당 일액의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 령	임금일액의 상한액(기본수당 일액의 상한액)
30세 미만	~~13,160 엔(6,580 엔)~~ 13.060 (6.530)
30세 이상 45세 미만	~~14,620 엔(7,310 엔)~~ 14.510 (7.255)
45세 이상 60세 미만	~~16,080 엔(8,040 엔)~~ 15.960 (7.980)
60세 이상 65세 미만	~~15,580 엔(7,011 엔)~~ 15.460 (6.957)

● 임금일액의 하한액은 ~~2,140~~ 2.120 엔(기본수당 일액의 하한액은 ~~1,712~~ 1.696 엔)이 됩니다.

그의 2 기본수당의 소정 급부일수가 바뀝니다.

● 단시간노동 피보험자 이외의 일반 피보험자와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의 소정 급부일수가 단일화되고,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직하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 이직한 날의 연령이 35세~44세인 분으로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정 수급자격자(※)의 소정 급부일수가 연장되고, 시행일 이후에 이직하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법개정후의 소정 급부일수]

① 특정 수급자격자의 경우 (③을 제외)

구분 \ 피보험자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80일	-
30세 이상 45세 미만		90일	180일	210일	240일
35세 이상 45세 미만				240일	270일
45세 이상 60세 미만		180일	240일	270일	330일
60세 이상 65세 미만		150일	180일	210일	240일

② 특정 수급자격자 이외의 경우(③을 제외)

구분 \ 피보험자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 연 령	90일		90일	120일	150일

③ 취직이 곤란한 자의 경우

구분 \ 피보험자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45세 미만	150일	300일			
45세 이상 65세 미만		360일			

※ 특정 수급자격자……도산, 해고 등의 이유에 의해 부득이 이직을 하신 분을 말합니다.

그의 3 60세 도달시 임금일액(日額) 산정의 특례가 폐지됩니다.

● 60세 도달시 이후에 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60세 도달시점의 임금일액과 이직시의 임금일액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임금일액에 의해 기본수당 일액을 산정하는 특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일 이후에 60세에 도달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폐지됩니다.
한편, 시행일 전날 이전에 60세에 도달한 분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60세 도달시의 임금일액 산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의 4 육아, 양호간병에 의한 휴업, 근무시간 단축조치에 대한 기본수당 일액(日額)산정의 특례가 창설됩니다.

● 육아휴업, 양호간병휴업(介護休業) 또는 육아·간병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조치에 의해 임금이 상실 또는 저하하고 있는 기간중에 도산, 해고 등의 이유로 인해 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휴업개시전 또는 근무시간 단축조치전의 임금일액에 따라 기본수당의 일액을 산정하는 특례가 제정됩니다.
이 특례는 시행일 이후에 휴업 또는 근무시간 단축조치의 적용이 개시된 분에게 적용됩니다.

* 특례조치의 요건, 수속은 안정소의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의 5 훈련연장 급부제도에 있어서 복수회 수강특례가 확충됩니다.

● 고용대책 임시특례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의 복수회 수강 등 특례조치의 대상자가 「4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3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특례기간이 「2004년도말까지」에서 「2007년도말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이 특례는 확대된 연령층(35세 이상 45세 미만)인 분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특례에 의거하는 수강지시를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그의 6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의 액수가 바뀝니다.

●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의 급부내용이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인 고연령 계속 피보험자의 급부내용으로 단일화되고, 시행일 이후에 이직하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법개정후의 액수]

피보험자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의 액수	기본수당 일액(日額)의 30일분	기본수당 일액(日額)의 50일분

그의 7 취업수당이 창설됩니다.

● 다양한 방법에 의한 조기취업의 실현을 위한 취업수당의 창설과 아울러 현행의 취직촉진급부가 정비되고, 취업촉진수당(취업수당,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준비수당)으로 통합됩니다.

● 취업수당의 창설
기본수당 수급자의 다양한 취업형태에 의한 조기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수당이 창설됩니다.
이 수당은 시행일 이후에 직업에 취업하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시행일 전날 이전에 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급요건의 판단, 급부액의 산정에 있어서 구(舊)기본수당 일액(日額) 및 구(舊)소정 급부일수가 적용됩니다만 상한액은 개정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급요건]
취업수당은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소정 급부일수의 3분의 1 이상, 또한 45일 이상인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상용고용 등 이외의 형태로 취업한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지급됩니다.

※ 주요 지급요건
① 대기(待期)가 경과한 후에 취업한 자일 것.
② 이직전의 사업주(관련사업주를 포함)에게 다시 고용된 자가 아닐 것.
③ 이직 이유에 의한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에 대기(待期)만료후 1개월간에 대해서는 안정소 또는 직업소개 사업자의 소개에 의해 재취직한 것.
④ 안정소에 구직신청한 날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상세한 것은 안정소의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급액]
・ 기본수당 일액(日額)의 30%에 상당하는 액수(※)를 취업일마다 지급.
※ 1일당 지급액의 상한은 ~~1,833~~ 1,879 엔(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470~~ 1,467 엔)입니다.
・ 취업수당의 지급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기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급절차]
・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에 맞추어, 4주일에 1회, 전회의 인정일에서 이번 회의 인정일 전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하여 「취업수당 지급신청서」에 수급자격자증과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안정소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 취업수당의 지급대상 중, 지급잔일수가 소정 급부일수의 3 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 재취직자 지원기금사업에 의한 조기취업 지원금(기본수당 일액(日額)의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취업일마다 지급)(주)이 지급됩니다.(이 경우, 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 조기취업 지원금은 여러분이 공공직업안정소에 「지불희망 금융기관 지정계」에 의해 등록을 한 금융기관구좌로 (재)고연령자 고용개발협회가 불입합니다.

○ 본 지원금은 일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한편, 이외에 일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서 50 만엔을 공제하고 그 잔액의 2 분의 1 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재취직 수당의 개정

재취직 수당에 대해서도 일정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일 이후에 안정된 직업에 취업하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① 지급액의 변경

● 지급액은 소정 급부일수의 지급잔일수(직업에 취업한 날의 전일(前日)에 있어서 일수)×30%×기본수당 일액(日額)(※)입니다.

※ 기본수당 일액(日額)의 상한액은 ~~6,110~~ 6,065 엔(60 세 이상 65 세 미만은 ~~4,927~~ 4,891 엔)입니다.

● 이 수당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수당액수를 기본수당 일액(日額)에서 제하고 얻은 일수(日數)에 상당하는 일수분(日數分)의 기본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시행일의 전날 이전에 이직하고 시행일 이후에 안정한 직업에 취업한 분에 대해서는 구(舊)기본수당 일액(日額) 및 구(舊)소정 급부일수에 의거하여 재취직 수당이 지급됩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수당 일액의 상한액은 적용됩니다.

※ 재취직 수당의 지급대상 중, 지급잔일수가 소정 급부일수의 3 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 재취직자 지원기금사업에 의한 조기 재취직 지원금(기본수당의 소정 급부일수의 지급잔일수에 40%를 곱한 액수를 지급)(주)이 지급됩니다.(이 경우, 재취직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 조기 재취직 지원금은 여러분이 공공직업안정소에 「지불희망 금융기관 지정계」에 의해 등록을 한 금융기관구좌로 (재)고연령자 고용개발협회가 불입합니다.

○ 본 지원금은 일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한편, 이외에 일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서 50 만엔을 공제하고 그 잔액의 2 분의 1 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 지급요건의 변경

이직 이유에 의한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의 대기(待期)만료후 1 개월간은 안정소에 의한 소개외에 직업안정법 제 4 조제 7 항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 사업자의 소개에 의할 때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③ 재취직 수당 수급후에 재이직한 경우 수급기간의 연장

재취직 수당의 지급을 받은 분으로서 이 수당의 지급을 받은 후 최초의 이직(새로 수급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직을 제외한다. 이하 「재취직」이라 합니다.)일이 수급기간내이고, 또한 재취직이 도산 등에 따른 것인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경우 또는 해고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이유로 인해 재이직한 경우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④ 기타

사업을 개시하고 재취직 수당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주가 되는 것이 요건이었습니다만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재취직 수당의 지급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상용취직 준비금의 상용취직 준비수당으로의 개정

상용취직 준비수당(종래의 상용취직 준비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일 이후에 안정한 직업에 취업하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① 지급액의 변경

- 지급액은 90(소정 급부일수의 지급잔일수가 90 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잔일수에 상당하는 수(그 수가 45 를 밑도는 경우에 있어서는 45)×30%×기본수당 일액(日額)(※)입니다.
  ※ 기본수당 일액(日額)의 상한액은 ~~6,110~~ 6,065 엔(60 세 이상 65 세 미만은 ~~4,927~~ 4,891 엔)입니다.
- 시행일 전날 이전에 이직하고 시행일 이후에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분에 대해서는 구(舊)기본수당 일액(日額) 및 구(舊)소정 급부일수에 의거하여 상용취직 준비수당이 지급됩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수당 일액(日額)의 상한은 적용됩니다.

② 지급대상자 범위의 변경

취직곤란자 중, 45 세 이상의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고용대책법 등에 의거하는 재취직 원조계획 등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③ 지급요건의 변경

안정소의 소개외에 직업소개 사업자의 소개에 의해 직업에 취업했을 때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 재취직 수당, 상용취직 준비수당의 지급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종래의 재취직 수당, 상용취직 준비금과 같습니다.

그의 8 교육훈련 급부금의 액수 등이 바뀝니다.

- 지급요건 기간, 급부율 및 상한액의 개정

  지급요건 기간, 급부율 및 상한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고 시행일 이후에 대상교육훈련의 수강(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개시한 분에게 적용됩니다.

  ① 지급요건 기간의 요건을 5 년 이상에서 3 년 이상으로 하는 것.

  ② 지급율, 상한액의 개정

  지급액은 지급요건 기간에 따라 이하와 같이 됩니다.

  a. 5 년 이상

  교육훈련 경비의 40%에 상당하는 액수가 됩니다. 다만, 그 액수가 20 만엔을 넘는 경우는 20 만엔으로 하고 8 천엔을 넘지 않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b. 3 년 이상 5 년 미만

  교육훈련 경비의 20%에 상당하는 액수가 됩니다. 다만, 그 액수가 10 만엔을 넘는 경우는 10 만엔으로 하고 8 천엔을 넘지 않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기간의 연장

  일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이후 1 년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인해 계속하여 30 일 이상 대상교육훈련의 수강을 개시할 수 없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헬로워크로 그 취지를 신고함으로서 당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수강개시일까지 교육훈련 급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적용대상 기간)에 그 수강을 개시할 수 없는 일수(최대 3 년까지)를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시행일 이후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인해 계속하여 30 일 이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된 분으로서 당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된 날이 이직후 1 년 이내인 분에게 적용됩니다.

그의 9 고연령 고용계속 급부의 지급요건 및 급부율이 바뀝니다.

● 고연령 고용계속 급부의 임금저하율 요건, 급부율의 개정
지급요건의 임금저하율에 대하여 15% 초과가 25% 초과로, 급부율에 대하여 25%가 15%로 됩니다.
한편, 이들의 개정은 이하와 같이 적용됩니다.

① 고연령 고용계속 기본급부금의 지급요건, 급부내용의 변경
60 세에 도달한 날(60 세 도달시에 있어서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5 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5 년에 달한 날)이 시행일 이후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고연령 재취직 급부금의 지급요건, 급부내용의 변경
- 시행일 이후에 이직하고 안정된 직업에 취업함으로서 피보험자가 된 분에게 적용됩니다.
- 시행일 전날 이전에 이직하고 안정된 직업에 취업함으로서 피보험자가 된 분에 대해서는 구(舊)임금 일액(日額)에 의거하여 개정전의 지급요건, 급부율, 지급한도액 및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시행일 전날 이전에 이직하고 시행일 이후에 안정된 직업에 취업함으로서 피보험자가 된 분에 대해서는 구(舊)임금 일액(日額)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급요건, 급부율, 지급한도액 및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 고연령 재취직 급부금과 재취직 수당과의 병급(倂給)조정
고연령 재취직 급부금의 지급을 받는 분이 동일한 취직에 대하여 재취직 수당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분이 재취직 수당의 지급을 받았을 때는 고연령 재취직 급부금은 지급되지 않고, 고연령 재취직 급부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는 재취직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병급(倂給)조정은 시행일 이후에 안정된 직업에 취업함으로서 피보험자가 된 분에게 적용됩니다.

그의 10 부정수급을 한 경우 납부명령액 등이 바뀝니다.

● 납부명령액의 인상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업 등 급부를 받은 경우의 납부명령액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 등 급부의 액수의 2 배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 되고, 시행일 이후의 부정행위에 적용됩니다.

● 연대반환·납부명령 대상자의 확대
연대반환·납부명령의 대상자로서 다음에 언급하는 자가 추가됩니다.
- 직업소개 사업자(직업안정법 제 4 조제 7 항)
- 업으로서 직업지도(직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자의 적성, 직업경험 기타 실정에 따라 행하는 것)를 하는 자

● 보고 등 대상자의 확대
보고 등의 대상자로서 수급자격자 등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 및 직업소개 사업자 등이 추가됩니다.

그의 11 고용보험료율이 바뀝니다.(2005 년 4 월 1 일 이후)

● 고용보험료율의 개정
고용보험료율이 2005 년 4 월 1 일부터 1,000 분의 2 가 인상됩니다(2005 년 3 월 31 일까지는 현행대로 적용됩니다.)

[변경내용]

사업의 종류		2005 년 3 월 31 일까지	2005 년 4 월 1 일 이후
1.	2 및 3 이외의 사업	17.5/1000 (7/1000)	19.5/1000 (8/1000)
2	○토지의 경작 혹은 개간 또는 식물의 재식(栽植), 재배, 채취 혹은 벌채의 사업, 기타 농림사업(원예 서비스의 사업을 제외.) ○ 동물의 사육 또는 수산동식물의 채포(採捕) 혹은 양식사업, 기타 축산, 양잠 또는 수산사업(우마의 육성, 낙농, 양계 또는 양돈사업 및 내수면 양식사업은 제외.) ○ 청주의 제조사업	19.5/1000 (8/1000)	21.5/1000 (9/1000)
3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축,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혹은 해체 또는 기타 준비사업	20.5/1000 (8/1000)	22.5/1000 (9/1000)

※ ( )은 피보험자인 분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 일반 보험료 액표(額表)의 폐지
일반 보험료 액표가 폐지되고, 피보험자인 분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액은 피보험자인 분의 임금 총액에 상기 표의 괄호내의 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가 됩니다. 다만, 2005 년 3 월 31 일까지의 동안은 계속하여 일반 보험료 액표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구직자 급부수급자의 구직활동 노력의무의 명확화, 「자식의 간호」나 공적기관이 모집하는 「일정한 볼런티어 활동」을 한 경우, 기본수당의 수급기간연장, 육아・간병휴업 급부의 상한액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도부현(都道府縣) 노동국 직업안정부 또는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